경운대학교 대학홍보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주요 교육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대내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높이는 대학홍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기획처장, 사무처장,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두고, 위원장을 기획처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으로 구성하고,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직원 중에서 홍보팀장을 두며,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가 된다.
- 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대학홍보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대내외 대학홍보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
- 2. 대내외 홍보물(소식지, 교내신문, 교지, 브로슈어 등) 기획 및 제작
- 3. 대학 언론홍보(광고, 특집기사 등)에 관한 제반 사항
- 4. 외부광고(옥탑광고, 배너광고 등)에 관한 제반 사항
- 5. 온라인홍보(홈페이지, SNS 등)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- 6. 경운대학교 학생홍보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- 7. 기타 대학홍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6조(수당)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, 홍보팀장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